

[] 하천점용허가 (변경)신청서
[]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뒤쪽 참조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 :)		
점용 (행위) 개요	하천의 명칭		
	점용(행위)위치 (면적 : m ²)		
	점용(행위)목적		
	지구지정현황(하천법제44조)		
	점용(행위)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일간)		
변경내용			

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(제38조제1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(제45조제1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(제20조제1항)에 따라 위와 같이 ([]하천점용허가 []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)를 (변경)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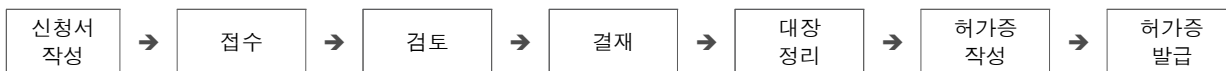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비고	점용목적은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.	수수료 없음
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 처리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, 유역환경청, 지방환경청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

처리기관, 처리기간

접용(행위)의 목적	처리기관		처리기간
	국가하천	지방하천	
토지의 접용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10일
하천시설의 접용	유역환경청·지방환경청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14일
공작물(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)의 신축·개축·변경	접용허가:유역환경청·지방환경청 기타: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20일
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·개축·변경	기후에너지환경부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60일
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	접용허가:유역환경청·지방환경청 기타: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20일
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,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20일
스케이팅장·유선장·도선장의 설치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20일
식물의 식재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5일
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20일
선박의 운항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12일